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사 선임 제한 요건 신설〉

■ 전현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51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안)	1
II . 검토의견	3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현희 · 홍기원 · 박은정 · 최혁진 · 김 윤 · 이성윤 ·
소병훈 · 이학영 · 한준호 · 장경태 · 서영교 의원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1.

다. 회 부 일 : 2025. 10. 22.

※ 의안번호 : 1365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II. 검토의견

1. 간사 선임 제한 요건 신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위원회의 소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간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간사) ① <u>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u>	제50조(간사) ① <u>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u> <u>다만, 위원회 소속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은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u> 1. 배우자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근무하는 경우, 간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 국회관계법 상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은 국회법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48조의2, 제155조제3의2호부터 제3의4호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표-2] 국회관계법 상 이해충돌방지 규정

규정	내 용
국회법 제32조의2~ 제32조의5, 제48조의2 및 제155조제3의2 ~3의4	◦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제32조의2)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제32조의3) ◦ 이해충돌의 신고(제32조의4) ◦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제32조의5) ◦ 이해충돌 위원 선임 제한(제48조의2) ◦ 이해관계 등록·변경 누락 또는 허위제출,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및 회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제155조의3의2~3의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척과 회피 -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 불가
인사청문회법 제17조	◦ 제척과 회피 -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참여 불가

위원회에서 간사는 소속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의사일정, 안전조정위원 선임, 의안 자동상정제도 적용 여부 및 안전의 소위원회 직접 회부 등에 있어서 협의의 주체가 되고, 위원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간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① 현행 국회관계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의장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전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정감사 및 조사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는 점,

② 「국회법」 제32조의4에서는 의원이 본인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안전 심사 등¹⁾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때에 이해충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 심사 등과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과의 관계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간접적·반사적 인과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²⁾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임.

1) 안전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2) 국회법해설 147p

그리고, 대상기관에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포함 여부 및 대상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비속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014